

삼척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1995년 8월 10일

의회운영 위원회

I.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5년 7월 28일 박병근의원 외 7인 의원발의
- 나. 위원회 회부일자 : 1995년 8월 9일
- 다. 심사일자 : 제7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95. 8. 10) 심사 : 의결

II. 제안설명의요지(제안설명자: 박병근의원)

가. 제안이유

- o '95. 4. 1 개정공포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에 의거, 의원정수 1인의 감소(남양동선거구)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제2대 지방의회에 한하여 의원임기가 3년으로 지방자치법 부칙에 의장, 부의장의 임기가 1년 6월로 변경한 점을 고려하여 상임위원회 상임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도 의장, 부의장의 임기와 같게 부칙에 규정함으로써,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나. 개정조례안 주요골자

- 가. 의원 총정수의 1인 감소(남양동선거구)에 따라 총무위원회의 위원정수를 당초 8명에서 7명으로 함.
- 나. 부칙에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를 2년 의회에 한하여 1년 6월로 규정함.

다. 개정조례안 주요내용 비교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상임위원회 설치) . . . 위원장수 1. 총무위원회 <u>8명</u> (부 칙) <u>이조래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p>	<p>제2조(상임위원회 설치) . . . 위원장수 1. 총무위원회 <u>7명</u> (부 칙) <u>① (시행일) 이조래는 1995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u> <u>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선임되는 상임위원회 위원 및 상임 위원장의 임기는 제5조 제1항 및 제6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년6월 로 한다.</u></p>

III.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길석)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23조 (자치구, 시·군의회의 의원정수)의 규정에 따라 의원정수가 종전보다 1인이 감소됨에 따라, 총무위원회의 위원장수도 종전 8명에서 7명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 지방자치법 부칙 3조 (이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로 구성되는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에 관한 특례)의 규정에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를 1년6월로 규정하여 부칙으로 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V. 토론요지 : 없 음

VI. 수정안의 요지 : 없 음

VII. 심사결과: 박병근의원외7인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됨.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 음